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p>제3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 2.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4.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6.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 7. 모금, 홍보, 장학 사업 8.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9.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 2.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4.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사회적 경제, 비영리 섹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육성, 교류, 협력, 투자, 지원, 공간 사업 6.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 7. 모금, 홍보, 장학 사업 8.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9.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임대 및 전대사업 2.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 3.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40조(재산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재산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삭제)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목적사업 실현과 경비 충당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2층 주택을 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용도로 구입하게 되어 해당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 (제3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2. (제40조) 부동산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40조 2항의 2호 삭제
3. (제41조) 5항은 2항과 중복되어 41조 5항 삭제

하는 방식으로 정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